



자주하는 질문 Q&A



민원인용 안내서

Q 신고 대상이나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.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A 네. 상단 오른쪽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민원인용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

Q 한 마리도 신고 대상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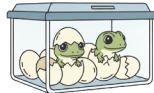
A 네. 마릿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관·양도·양수·폐사 신고 대상이에요.



Q 보관 신고는 언제 하나요?

A 법 시행일(2025년 12월 14일) 이전에 보유한 동물은 **보관 신고**를 해야 하고, 그 이후에 분양받은 동물은 **양수 신고**만 하면 돼요.

Q 보관 신고 후에 새끼가 태어나면, 그 개체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


A **아니요.** 백색목록 또는 수출·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은 새끼가 태어나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. 법 시행일에 보유중인 개체만 신고하면 돼요.

Q 무료로 분양하거나 친구한테 줘도 양도·양수 신고해야 하나요?

A 네. 판매하거나 무료 분양이거나 관계없이, 주고받는 모든 경우에는 양도·양수 신고가 필요해요

Q 온라인 말고,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A 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, 해당 시·군·구청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돼요.

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

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

야생동물을 키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!

- 백색목록 및 지자체 수출·수입 허가대상종 대상 -



문의처

소재지 시·군·구청 또는
국립생물자원관(032-590-7447)

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, 반드시 보관신고하세요!

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
야생동물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 신고제도가
시행됩니다.

- ✓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**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**
→ **지정관리 야생동물**

백색목록은
지정관리 야생동물 중
수입·거래를 허용하는 목록으로
신고가 필요해요.



야생동물

법정관리종

멸종위기종, CITES,
유입주의 생물,
생태계 교란 생물,
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,
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,
천연기념물, 가축 등
기존 법령 준수

지정관리 야생동물

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

백색목록

수입·거래를 위해 신고

백색목록 외

원칙적 수입·거래 금지
(공익·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가)

- ✓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**수출·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**,
백색목록, **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**은 **보관 신고 필수**



법 시행일(25. 12. 14)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
백색목록에 없어도 **2026년 6월 13일**까지
보관 신고하면, 해당 동물은 계속 기를 수 있어요.
단, 증식과 거래는 안돼요!

야생동물, '25년 12월 14일부터 키우게 된 순간부터 끝까지 신고가 필요해요.

- ✓ **보관**: '25년 12월 14일 기준 보관중인 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
야생생물, 백색목록,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
- ✓ **양도·양수**: 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, 백색목록 거래 시
양도자는 양도신고, 양수자는 양수 신고
- ✓ **폐사**: 보유중인 수출·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, 백색목록,
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



보관



양도·양수



폐사

양도·양수·보관·폐사 신고 방법



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속

신고서
작성

보관

양도

양수

폐사

접수(시·군·구청)

서류 검토 및 결재

신고확인증 교부

(우편 수령)

